

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	2008.	3.	3	조례 제 927호
개정	2009.	1.	12	조례 제 974호
	2009.	5.	29	조례 제1033호
	2010.	8.	2	조례 제1093호
일부개정	2011.	11.	3	조례 제1178호
일부개정	2013.	5.	7	조례 제1286호
일부개정	2015.	2.	27	조례 제1432호
일부개정	2016.	8.	8	조례 제1595호
일부개정	2016.	12.	12	조례 제1621호(시청, 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17.	5.	4	조례 제1655호
일부개정	2018.	5.	14	조례 제1805호
일부개정	2019.	1.	10	조례 제1900호
일부개정	2019.	12.	13	조례 제1978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20.	2.	28	조례 제2007호
일부개정	2021.	4.	29	조례 제2129호
일부개정	2021.	9.	27	조례 제2171호
일부개정	2022.	5.	17	조례 제230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7. 5. 4>

제2조 삭제 <2016. 8. 8>

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5. 7, 2015. 2. 27, 2016. 8. 8, 2017. 5. 4, 2019. 1. 10, 2020. 2. 28, 2021. 9. 27>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나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다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그 지회 등으로서 시에

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자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

나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

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

라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

마.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

3. 삭제 <2019. 1. 10>

4. 삭제 <2019. 1. 10>

5. 삭제 <2019. 1. 10>

[전문개정 2009. 1. 12]

제4조 삭제 <2016. 8. 8>

제5조(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6. 8. 8, 2017. 5. 4, 2019. 1. 10>

1. 국경일, 기념일 등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국경일, 기념일 등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
6. 공공시설물 등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
7.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각종 표식 제작

[제목개정 2017. 5. 4]
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시장은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그 지

회 등(이하 “보훈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27, 2019. 1. 10, 2020. 2. 28>

1.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비
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순례비용
 3. 자원봉사 사업 및 보훈단체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
- [제목개정 2015. 2. 27]

제7조(복지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3, 2013. 5. 7, 2015. 2. 27, 2017. 5. 4, 2019. 1. 10>

1.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
2.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
3. 희생·공헌자 사망 시 조문
4. 경기도 지정 병원 및 약국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
(단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한정한다)

제8조(수당 등 지급) 시장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,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(이하 “수당 등”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27, 2016. 8. 8, 2017. 5. 4, 2019. 1. 10, 2020. 2. 28, 2021. 9. 27, 2022. 5. 17>

1. 보훈명예수당: 1명당 월 100,000원 이내
2. 참전명예수당
 - 가. 80세 이상인 사람(수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80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: 월 70,000원 이내
 - 나. 80세 미만인 사람: 월 30,000원 이내
3. 사망위로금: 200,000원 이내
4. 국가유공자 위문금: 연 1회(6월) 50,000원 이내(단, 제5호에 따른 위문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)
5.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: 연 2회(3월, 8월) 각각 200,000원 이내

6.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월 30,000원 이내

[전문개정 2011. 11. 3]

[제목개정 2015. 2. 27]

제9조(수당 등 지급대상자)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17. 5. 4, 2019. 1. 10, 2020. 2. 28, 2021. 4. 29, 2021. 9. 27>

1.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: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

나.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: 신청일 현재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

다.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로 둔 사람

라.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대상자: 6월 1일 현재 국가보훈대상자(단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외한다)

마.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대상자: 3월 1일과 8월 15일 현재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

2.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: 사망한 참전유공자(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를 말한다)의 배우자. 다만,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3. 삭제 <2020. 2. 28>

4. 삭제 <2020. 2. 28>

5. 삭제 <2020. 2. 28>

[전문개정 2015. 2. 27]

제10조(수당 등 신청) ①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수당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(최초 1회에 한정한다)하여야

한다. 다만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. 12. 12, 2017. 5. 4, 2019. 1. 10, 2019. 12. 13, 2020. 2. 28>

1.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
 2.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(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한정하며,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다)
 3.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
-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 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읍·면·동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의 명부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명부를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20. 2. 28>
- ④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시로 전입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9. 27>

[전문개정 2015. 2. 27]

- 제11조(수당 등의 지급결정 및 지급)** ① 시장은 월별로 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 8. 2, 2015. 2. 27, 2017. 5. 4, 2018. 5. 14>
- ② 보훈명예수당,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7. 5. 4, 2020. 2. 28>
- ③ 수당 등의 지급은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지급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0. 8. 2, 2015. 2.

27, 2017. 5. 4, 2020. 2. 28>

1.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: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)
2. 사망위로금: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
3. 국가유공자 위문금: 6월 30일 이내
4.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: 각 3월 31일과 8월 31일 이내
5.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매월 25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)

④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5. 2. 27, 개정 2017. 5. 4>

[본조신설 2009. 1. 12]

[제목개정 2017. 5. 4]

제12조(수당 등의 지급중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2. 27, 2016. 8. 8, 2017. 5. 4>

1.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
3. 삭제 <2016. 8. 8>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. <개정 2015. 2. 27, 2017. 5. 4>

[본조신설 2009. 1. 12]

[제목개정 2017. 5. 4]

제13조(수당 등의 환수조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1. 3, 2015. 2. 27>

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
2. 수당 등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11. 3, 개정 2015. 2. 27>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2. 27, 개정 2018. 5. 14>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2. 27, 개정 2017. 5. 4>

[본조신설 2009. 1. 12]

[제목개정 2015. 2. 27]

제14조(민간의 참여조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 2009. 1. 12]

제15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5. 4>

[본조신설 2009. 1. 12]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2. 27>

[제9조에서 이동 2009. 1. 12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. 12 조례 제97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6.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「용인시 6.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6.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 지급받은 자는 계속하여 월50,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한다.

[본조신설 2009. 5. 29]

부칙 <2009. 5. 29 조례 제10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8. 2 조례 제1093호>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1. 3 조례 제117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5. 7 조례 제128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2. 27 조례 제143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제8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6. 8. 8 조례 제159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수당 등의 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6. 12. 12 조례 제1621호, 시청, 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⑤ 「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주민센터,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⑥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5. 4 조례 제165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 속한 달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. 10 조례 제1900호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13 조례 제1978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”를 “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⑤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2. 28 조례 제200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의 준비) 시장은 제8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이 조례 시행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부칙 〈2021. 4. 29 조례 제212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1. 9. 27 조례 제2171호〉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2. 5. 17 조례 제2305호〉

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3호서식] 〈신설 2020. 2. 28〉
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				처리기간 15일
참전유공자	성명		생년월일	
	사망일자			
신청인 (배우자)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	연락처	자택 : , 휴대폰 :		
예금계좌	예금주		지급기관 (은행명 등)	
	계좌번호			
「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용인시장 귀하				
구비서류	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3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			수수료
				없음
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최근 전입일, 국가유공자확인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.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)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